

[] 형식승인기관

[] 검정기관

[] 자체검정사업자

[] 자체정기검사사업자

[] 적합성확인기관

지정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		처리기간	7일
신청인	업체명	성명(대표자)		사업자등록번호	
	본사 주소	본사 전화번호		본사 팩스번호	
	사업장 주소	사업장 전화번호		사업장 팩스번호	
변경사항 및 사유	변경된 사항			지정사항 변경일 년 월 일	
	변경사유				

「계량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·제26조제5항·제32조제3항·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·제26조제3항·제31조제2항·제39조제3항에 따라 ([] 형식승인기관, [] 검정기관, [] 자체검정사업자, [] 자체정기검사사업자, [] 적합성확인기관) 지정사항 중 변경된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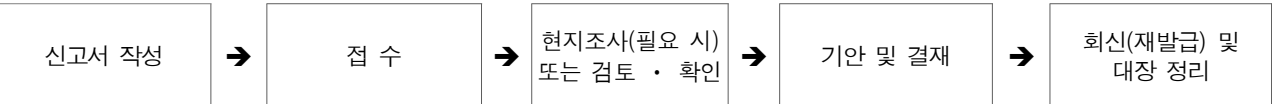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
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

처리절차



신고인 처리기관: 국가기술표준원 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(계량업무 담당부서)

비고: 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9조제3항, 제26조제3항, 제31조제2항 또는 제39조제3항 따라 변경사항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.